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장에 대한 임용권을 대통령으로 유지

3. 주요내용
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장에 대한 임용권을 대통령으로 유지
 -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정에 따라 대통령이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소방공무원 임용권의 제외 대상을 기존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으로 하던 것을 소방본부장, 부분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으로 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장에 대한 임용권을 대통령으로 유지하고자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」 제36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소방본부장”을 “소방본부장, 부분부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임용권의 위임) ① 대통령은 「소방공무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정 및 소방령에 대한 임용권과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하고, 시·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(<u>소방본부장</u>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제외한다)에 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위임한다.	제3조(임용권의 위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소방본부장, 부분부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~ ⑧ (생략)	② ~ ⑧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소방청 운영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5 - 7048